

의안 번호	2520	<b>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5. 12. 4.(목)
- 발 의 자 : 문기호 의원 외 4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4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5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문기호 의원)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공인 관리관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제시된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인 관리 주체 변경을 위한 것으로,
-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# 근 거 법 규

##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